

# 고시내용

페이지 : 1/1

게재(요청)일자	2015-07-16	담당부서	도시계획과	류성완
고시공고구분	고시	고시공고번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5-79호	
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				
제목	도시계획시설(철도:정거장)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			
내용	건설부고시 제358호(1990. 6. 22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철도:정거장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26조, 제43조, 같은법 시행령 제20조, 제35조, 『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』 제68조의 규정과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철도:정거장) 변경결정을 하고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.			